

[별첨 1]

순찰일지

											계	팀장	과장
일시	2015 . . (.요일) 날씨:												
순찰거리													
순찰구역										순찰 노선			
순찰자	책임자	지방행정 (인)											
	순찰반원												
신발생무허가건물	위치	건축주 성명	면적 ○×○= m ²	용도	구조	형태 및 공정	지구 분	토지소유 구분	조치내 용	비고			
기 타													

[별첨 2]

철 거 일 지

							계	팀장	과장	
철거일자		2015년 월 일(요일) 날짜:								
서명	서명날인	지방행정				(인)				
날인	철거반원									
일련번호		향측연도 및 차 수	도 엽 및 건축물번호	위 치	건 축 주	면 적 ○×○ = m ²	철거상태			
철거	처리부						기초	기둥	벽 체	지붕
기타										

[별첨 4]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확인 조사서

소직은 명에 의하여 관내 동 번지 호(지상, 옥상)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가설물)에 대한 철거(멸실)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일 2015. . .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 위법건축물 현황

위 치	건축주 등	구조	용도	면적	처리 유형	철 거 상 태				철거 일자	확인 일자
						기 초	기 중	벽 체	지 붕		

□ 기타 사항 :

※ 첨부 : 철거(멸실)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담당자	담당주사	과 장

성북구청장 귀하

[별첨 5]

위법건축물 표지

발급번호:

위 치	성북구 동 가 번지 호	적발일자	2015. . .
건 축 주		공사시공자	
착공일자			
주 용 도			
내 용	공사진행 내 용	면적: m ² 구조: 층수: 공정: %	
<p>이 건축물은 같은법 제 조의 규정에 위법한 건축물(무허가)로서 같은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 .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북 구 청 장</p>			
<p>◦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건축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p> <p>◦이 표지는 같은 동법 제79조 제4항의 의거 부착했으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주택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성북구청 주택관리과 ☎02)2241-2722</p>			

[별첨 6]

발급번호:

위반건축물 정비 통고서

위 치	성북구 동 가 번지 호	적발일자	
건축주		공사시공자	
착 공			
주용도		부속용도	
위법 사항		공사진행 진 도	면적 m ² 구조 공정 %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물로서 동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고하오니 2015. . . 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 .

성북구청장

교부내용	교부장소	수 령 자				교 부 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수령인	소속	직명	수령인

수령거부사유:

※유의사항

-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지시 통고를 하였으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반건축물을 대집행 철거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 동법 제2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전기, 수도, 전화, 도시가스 공급의 설치나, 중지를 요청할수 있으며
- 동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또 동법 제106조 내지 제112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별첨 7]

대 집 행 계 고 서

제 호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1.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동 번지 호 지상에 축조한 (사용중인)건축물은 건축법제()조를 위반하여 건축하였습니다.
(구조 : , 위반면적 : m², 용도 :)
2. 위 건축물은 건축법상 대지, 구조, 용도 등이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시미관상 이를 방치함은 사회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 철거 대집행 계고서를 송달 하였으나, 지정기일 까지 자진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당구는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겠습니다.
(계고기간 : 2015. . . 까지)
3. 이것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2015. . .

성 북 구 청 장

[별첨 8]

대 집 행 영 장

제 호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p>1.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동 번지 호 지상에 축조한 (사용중인)건축물은 건축법제 ()조를 위반하여 건축하였습니다. (구조 : , 위반면적 : m², 용도 :)</p> <p>2. 위 건축물은 건축법상 대지, 구조, 용도 등이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시미관상 이를 방치함은 사회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 철거대집행 계고서를 송달 하였으나, 지정기일 까지 자진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당구는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겠습니다. (계고기간 : 2015. . .까지)</p> <p>3. 이것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p>							
대집행 일 시	대집행 책임자명		대집행비용 (금액)				
2015. . 시	소속:성북구청 성명		계	대집행비용(금액)			

○ 계고서 발부일자 : 2015. . .

○ 영 장 발부일자 : 2015. . .

성 북 구 청 장